

제26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신 건 택
(새누리당, 기획경제위원회)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새누리당 신건택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 명예시민증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명예시민증의 권위와 차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우선,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거주 요건을
다소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의 거주요건이 「국적법」이 제시하는
귀하 대상자의 거주요건과 유사해
서울시 명예시민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추천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추천 조건을 다소 강화해
명예시민증의 권위와 차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